

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	10일
신청법인	명칭			전화번호	
	소재지				
대표자 (이사·청산인)	성명			생년월일	
	주소			전화번호	
처분재산	종류 및 수량				
	금액				
	처분방법				
처분사유					

「민법」 제80조제2항 및 「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금융위원회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해산 당시의 정관 1부(해산신고 시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2.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(사단법인의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	---	-----------

